

어 선 원 및 어 선 재 해 보 상 보 험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가능케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 ·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일반관리비·손해사정비 등 운영비용인 부가보험료 비율을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수준의 부가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고지의 신청방법·수단 등(안 제6조의5)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우편·휴대전화·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부가보험료율 산정방법(별표 제1호 가목, 나목)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을 일반관리비, 손해사정비, 공통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전자문서 고지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의 독촉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2.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휴대전화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납부의무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45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가.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100%) = 위험보험료율(80%) + 부가보험료율(20%)”을 “가.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의 “나. 어선보험의 보험료율(100%) = 위험보험료율(80%) + 부가보험료율(20%)”을 “나.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5(전자문서 고지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u> <u>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방법으로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의 독촉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u> <u>1.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u> <u>2.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휴대전화</u> <u>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u>

을 통한 납입 고지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납부의무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45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3.24>**

보험료율의 산정방법 (제6조 및 제7조의2 관련)

1.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

나.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 위험보험료율 + 부가보험료율**

주1) 위험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산일부터 어선등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보험가입금액(어선원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2) 부가보험료율은 손해사정비, 일반관리비, 공통관리비 및 대급(貸給) 취급경비 등 재해보상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이 총사업비(보험급여를 포함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에는 위험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에는 위험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을 합산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4

어선원보험 전자고지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00. 00.>

어선원보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 구 분	[]신규 []변경 []철회(해지)	
② 사 업 장	어선명	어선번호
③ 보험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번호)
④ 고 지 방 법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 그 밖의 방법(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⑤ 수 신 자	성명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해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문서로 전자고지를 한 경우 ④란 고지방법에서 선택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 또는 독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신청하려는 신규, 변경 또는 철회(해지) 중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2. ②란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어선의 어선명, 어선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4. ④란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 표시를 하고, 선택한 고지방법에 다음 각 목의 안내에 따라 적습니다.
 - 가.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나. “그 밖의 방법” 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중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자 등을 통해 고지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⑤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관할 회원조합이나 수협중앙회 콜센터(1588-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